

04 ORIGIN ANALYSIS

- 1.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 2. 미국의 관세회피 단속 강화 동향**
 - CBP EAPA 회피조사를 중심으로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오윤진
한국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장



구지현
한국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전문연구원

1.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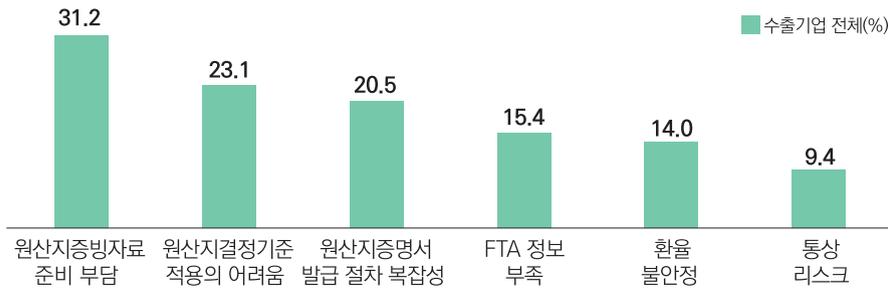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수출에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은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절차로, 기업의 실질적인 FTA 활용 성과와 직결되는 요소로 평가된다. 원산지증명서가 적정하게 발급·관리되지 않을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거나 통관 과정에서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들에게 원산지증명서는 단순한 구비서류를 넘어, FTA 활용의 성패를 좌우하는 전략적 실무 단계로 인식되고 있다.

2025년 6월 한국원산지정보원이 605개 FTA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FTA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이 FTA 활용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상위 3개 항목이 모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애로사항은 원산지 증빙자료 준비 부담(31.2%)이었으며, 이어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의 어려움(23.1%)과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의 복잡성(20.5%)이 그 뒤를 따랐다.

〈표 1〉 'FTA 활용 애로사항' 조사 결과

Q. FTA 활용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의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선택형, 중복 응답 가능)



주 : 2025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605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일부

이처럼 FTA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의 70% 이상이 원산지 입증 및 발급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직접 원산지를 판정·입증해야 하는 실무적 부담과 발급서류 준비 및 신청 등 행정적 절차가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본 고는 지난 6월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2025년 12월 후속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부터 관리 여건, 서류 준비 과정 등 실무 전반을 점검함으로써 향후 제도 개선 및 정책지원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조사 개요

본 설문조사는 2025년 12월,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제고하고자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관리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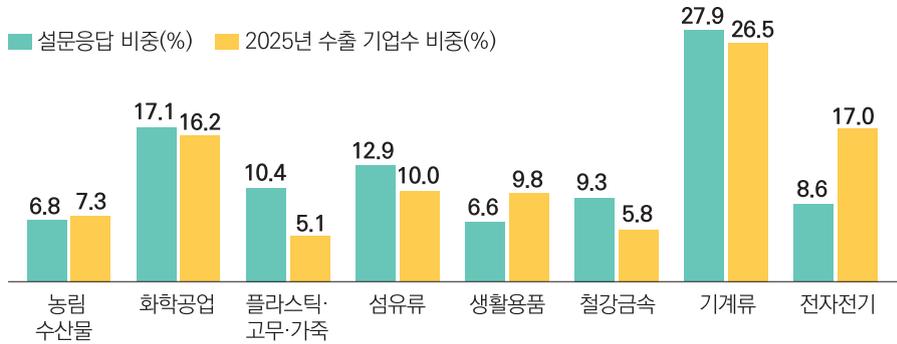
설문 문항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 업무 환경, 주요 애로사항, 제도 및 시스템 개선 수요 등으로 구성하여, 발급 준비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실무 전반을 포괄하도록 설계하였다.

특히 본 조사는 FTA를 활용하는 기업의 실제 업무 흐름에 따른 단계별 애로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조사에는 총 603개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556개사(92.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중견기업 40개사(6.6%), 대기업 7개사(1.2%)가 응답하였다.

업종별 응답 비중은 기계류(27.9%)가 가장 높았으며, 화학공업제품(17.1%), 섬유류(12.9%),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10.4%), 철강금속제품(9.3%), 전자전기제품(8.6%) 순으로 나타나, 제조업 중심의 수출기업이 주요 응답층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사 응답 기업의 산업군별 분포는 2025년도 기준 FTA 수출기업의 산업군별 분포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여, 본 설문조사의 응답이 실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산업별 구조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2〉 전체 수출기업 산업군별 응답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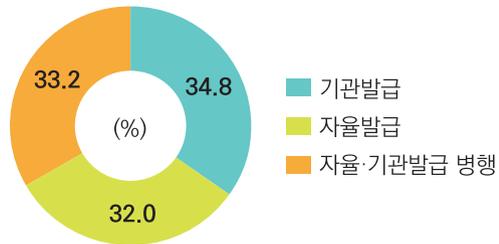
3.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 환경 및 입증 서류 관리 실태

(1) 발급 방식 및 업무 환경 실태

응답 기업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을 살펴보면, 기관발급을 활용하는 기업은 34.8%(210개), 자율발급은 32%(193개), 자율·기관 병행 발급은 33.2%(200개)로 나타나, 발급 방식이 특정 유형에 편중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분산된 양상을 보였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분석한 결과, 응답 기업의 64.7%가 '보통'이라고 답하며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양호' 또는 '매우 양호'로 평가한 기업은 33% 수준이었으나, 14.4%의 기업은 여전히 발급 환경이 '열악'하거나 '매우 열악'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발급 업무 환경은 특정 평가로 치우치지보다, 다수의 기업이 평이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표 3〉 FTA 활용 기업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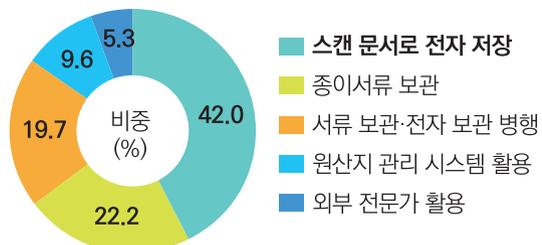
한편, 업무 환경이 열악하다고 응답한 사유로 인력 부족(31.0%)과 전문성 부재(20.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협력사 공조 미흡(10.3%), 내부 지침 및 시스템 불편(각 9.2%)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는 원산지 발급 및 관리 업무가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전문 인력의 확보와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이 병행되어야 하는 전문적 업무 영역임을 보여준다.

(2) 증빙서류 보관 및 원산지관리 시스템 활용 실태

원산지증명서 보관 방식을 살펴보면, 스캔 보관 방식이 42.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종이 서류 보관은 22.2%, 서류·전자 병행 보관이 19.7%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9.6%에 불과하였으며, 외부 전문가에게 관리를 위탁하는 비중도 5.3%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대다수 기업이 원산지 관리 시스템에 기반한 체계적 관리보다는 개별 기업 차원의 수기 방식이나 단순 전자 저장 방식에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4〉 FTA 활용 기업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보관 등 관리 현황

Q. 귀사에서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보관 등의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편,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기업(545개사)을 대상으로 그 사유를 조사한 결과, ‘기존 업무방식의 익숙함(25.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자체 시스템 도입 비용 부담(18.7%)’과 ‘운영 인력 부족(18.5%)’이 주요 장애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내부 사용자의 시스템 이해도 부족(12.7%)’ 및 ‘전사적자원관리(ERP)와의 연계 어려움(8.1%)’ 등도 시스템 도입을 저해하는 요소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스템 도입 여부가 단순한 선택의 문제를 넘어, 기업의 재무적 여건, 인적 역량, 기존 인프라와의 호환성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향후 원산지관리 시스템은 기업별 실무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리 모델을 고도화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전략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원산지증명서 발급 애로 및 정책 수요

(1) 주요 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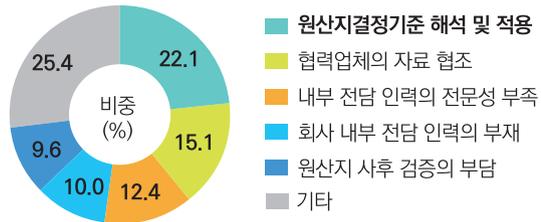
특히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에서 기업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부담 요인은 ‘원산지결정기준의 해석 및 적용(22.1%)’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서술형 응답을 통해 “협정별로 상이한 원산지결정기준은 전문 용어가 많아 직관적인 해석이 어렵고, 특히 원산지결정기준 판정의 기초가 되는 BOM 작성 시, 원재료 HS Code 확인과 제조원가 계산에 필요한 증빙 자료를 직접 수집·검토해야 하는 점이 실무상 가장 큰 부담”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원산지 판정 기준에 대한 기업 내부의 이해도와 실무적 대응 역량을 확보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어 협력업체의 ‘자료 협조 미흡(15.1%)’ 또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세부 원재료의 원산지나 제조 공정 정보는 실제 부품을 생산하는 공급사만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라는

점에서, 협력사(부품 공급업체)의 협조 없이는 완제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어 수출기업들은 공급망 관리 단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내부 전담 인력의 전문성 부족(12.4%)과 인력 부재(10.0%) 역시 주요 애로사항으로 확인되었다.

〈표 5〉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 애로사항 TOP 5

Q.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애로를 겪는 서류를 살펴보면, 응답 기업의 86.1%가 ‘수출 거래 서류’보다 ‘원산지 입증 서류’ 준비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세부 서류별로는 원산지(포괄)확인서(32.9%), 원재료명세서(28.5%), 원산지소명서(15.2%), 원재료 구매 관련 서류(15.2%) 순으로 제시되었는데, 이는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출처와 제조 공정 정보를 증빙하는 단계에 부담이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원산지 입증 서류 준비가 어렵다고 인식한 이유로는 협력 업체 자료 수집의 어려움(50.9%)이 가장 많이 응답 되었으며, 이어 서류 준비 및 작성의 복잡성(11.4%), 협력사 교육 부담(9.8%), 원산지 판정 기준 해석의 어려움(9.6%), 전문성 부족(7.1%), 비용·시간 부담(6.4%) 등이 뒤를 이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의 부담이 특정 서류나 절차에 국한되기보다는, 협력사와의 자료 연계, 제도 이해 수준, 내부 관리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났다.



〈표 6〉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준비가 가장 어려운 서류와 이유

Q.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작성 또는 준비가 가장 어려운 서류는 무엇입니까?

	원산지 입증 서류 종류	어려운 이유 TOP 3
원산지 입증 서류 86.1%	- 협력업체의 원산지확인서 32.9% - 원재료명세서(BOM) 28.5% - 원산지소명서 15.2% - 원재료 구매 관련 서류 15.2% - 제조공정도 6.2% - 기타 1.9%	1위 협력업체 자료 수집
		2위 서류 준비 및 작성의 복잡성
		3위 협력업체 발급 서류를 위한 협력사 교육 부담
수출 거래 서류 10.3%	- 운송서류(B/L, AWB 등) 45.2% - 수출계약서 33.9% - 상업송장 9.7% - 포장명세서 6.5% - 기타 4.8%	1위 서류 작성의 복잡성
		2위 협력업체 자료 수집
		3위 조직 및 전문성 부족

전반적으로 볼 때, 원산지증명서 발급 애로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를 넘어 내부의 전문 역량 확보와 외부 공급망과의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이라는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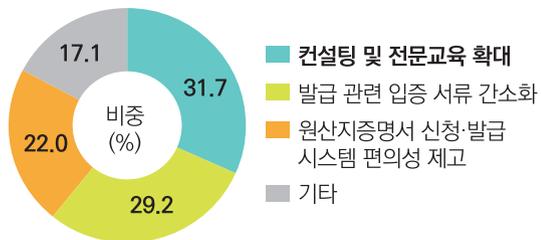
(2) 정책 수요

설문 응답 기업들은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겪는 실무적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행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정책으로 ‘컨설팅 및 전문교육 확대(31.7%)’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 ‘원산지 입증 서류 간소화(29.2%)’와 ‘시스템의 사용 편의성 제고(22.0%)’ 등이 주요 과제로 도출되었다.

〈표 7〉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관리를 위한 우선 지원 정책 상위 TOP 3

Q.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관리를 위해 정부나 한국원산지정보원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은 무엇입니까?



먼저 '컨설팅 및 전문교육 확대'와 관련하여,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산업별 맞춤형 지원 확대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화학, 기계, 농산물 등 제품군별로 상이한 원산지결정기준 및 증빙 요건 등 현장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원산지 판정의 핵심인 HS Code 분류 및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에서 일대일 컨설팅이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을 고려하여, 온라인 기반의 원격 자문 서비스를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외국인 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신설과 지역별 거점 교육 확대에 대한 수요도 확인되었으며, 이는 교육 수요층을 보다 폭넓게 포용하기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입증 서류 간소화'와 관련하여, 기업들은 원산지 판정의 기초가 되는 원재료 정보 및 제조 공정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협력 업체로부터의 자료 취합 단계가 FTA 활용의 주요 병목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어, 기업과 협력업체 간 원산지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연계 플랫폼 구축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제조원가계산서, 제조공정도 등 현재 권고 서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증빙 자료들을 표준화하여, 서류 작성 및 검토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수요도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사용 편의성 제고'와 관련하여, 실무자의 숙련도에 따른 활용 효율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숙련된 담당자와 달리 경험이 부족한 실무자는 시스템 오류 발생 시 원인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며 업무 지연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용자 중심의 직관적인 시스템 인터페이스(UI/UX) 고도화와 함께 실무자의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실무 현장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뒷면 지침(Overleaf Notes)¹⁾'의 인쇄 및 관리 절차에 대한 개선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원산지 정보 전자교환 시스템(EODES) 확대 추세에 맞추어, 데이터 직접 교환 방식으로 증명 체계를 고도화하거나 뒷면 지침을 전자적 이미지로 대체하는 방안 등이 실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종합하면, 기업들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교육 훈련, 상담 서비스 등 실무 지원 기능의 내실화와 함께 제도적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보완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그간의

1) 현행 규정상 원본에 뒷면에 작성 지침(Overleaf Notes)은 반드시 양면 인쇄되어야 하고 상하 방향이 일치해야 하는 등 형식적 요건이 요구되나, 출력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관발급의 경우 원본 출력이 1회로 제한되어 있어 단순 인쇄 오류에도 재발급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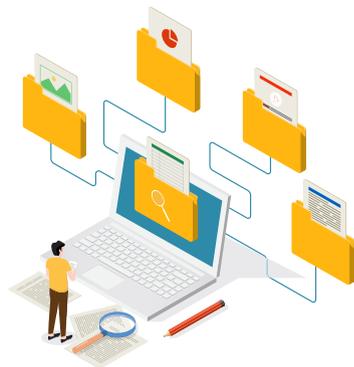
제도적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인적 자원 한계로 인한 실무적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준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설문조사 결과, 특히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FTA 활용 과정에서 필수적인 절차로서 발급 준비 단계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실무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원산지 입증서류 준비, 증빙자료 확보, 원산지 판정기준 해석, 사후 검증 대응 등 발급 전·후 업무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다수 기업은 발급 환경을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으나, 제도·시스템·전문성 측면에서 다양한 실무적 어려움을 함께 언급하였다. 이는 단순한 절차 안내를 넘어, 규정 해석과 시스템 활용 지원 등 실무 수행을 뒷받침하는 지원 체계가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최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환경규제 준수 및 비특혜 원산지증명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실무 지원의 필요성도 함께 확인되었다.

종합하면, 특히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대다수의 애로사항은 이를 운영하는 ‘실무 역량의 편차’와 ‘전담 인력의 부재’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고도화와 지속적 제도 보완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무자의 숙련도에 따라 FTA 활용 성과가 좌우되는 ‘인적 전문성 의존’구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정책 지원의 핵심은 제도적 절차 개선을 넘어, 업종별 전문가 매칭과 실무형 교육 체계를 내실화함으로써 현장의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FTA 활용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도와 지원 체계가 기업의 실무 역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FTA 활용 기반이 보다 견고하게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미국의 관세회피 단속 강화 동향

- CBP EAPA 회피조사를 중심으로



김세라
한국원산지정보원 정책연구팀장

1. 들어가며

미국은 국가안보와 경제질서 유지를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관세의 부과와 집행을 활용하고 있으며, 원산지 조작이나 제3국 우회수입 등 관세회피 행위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무역원활화 및 집행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TFTEA)」에 따라 2016년 도입된 「집행 및 보호법(Enforce and Protect Act, EAPA)」은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회피(evasion)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관련 집행체계를 제도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EAPA상 회피란 미국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문서·정보·진술을 제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함으로써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감액 또는 적용 배제를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최근 이러한 대응은 단순한 행정조사를 넘어, 주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종합적 단속 체계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8월에는 법무부(DOJ)를 중심으로 CBP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무역사기 단속 태스크포스(Trade Fraud Task Force, TFTF)’가 출범하여, 관세 회피 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단속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정책 기초하에서, CBP의 주요 EAPA 판정 사례를 분석하고 유형별 회피 수법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CBP의 EAPA 회피(Evasion) 조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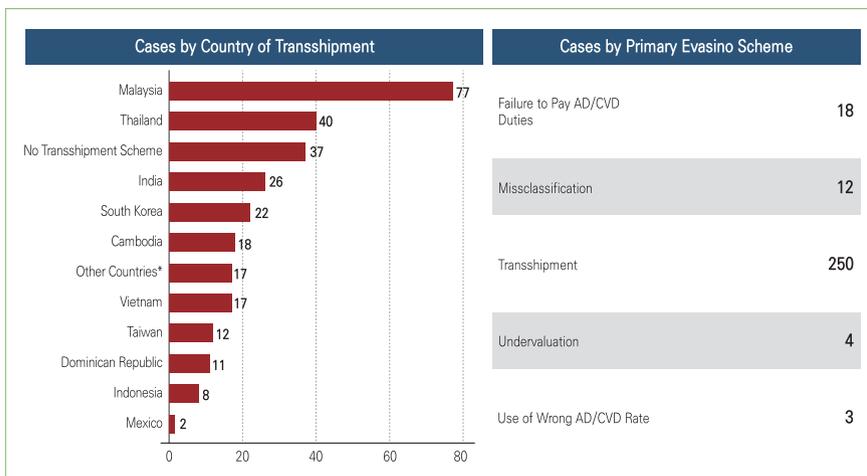
CBP가 공개한 EAPA 조사 통계에 따르면(FY 2016¹⁾~ 2025.10.15. 누적), 중간조치²⁾를 취하거나 최종 회피 판정을 내린 사건은 총 421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중국이 추정 원산지³⁾로 확인된 사례는 287건으로 전체의 약 68%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또한 중국산으로 추정된 회피 사례의 주요 환적·경유국은 말레이시아 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태국 40건, 인도 26건, 한국 22건³⁾, 캄보디아 18건, 기타 국가 17건, 베트남 17건, 대만 12건, 도미니카공화국 11건, 인도네시아 8건, 멕시코 2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 EAPA 회피조사 현황 및 중국이 추정 원산지인 회피 사례-환적국 분포



- 1) 본 자료의 FY(회계연도)는 미국 연방정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전년도 10월 1일부터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를 의미함. 예를 들어 FY 2016은 2015.10.1~2016.9.30.임
- 2) 중간조치란 CBP가 EAPA 조사 과정에서 관세 회피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최종 판정 전이라도 수입업자에게 추가 관세에 대한 담보 제공 및 현금 예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임
- 3) 한국 관련 22건은 개별 위반 건수가 아닌 제보업체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임. 세부 검토 결과, 해당 건수의 대부분은 중국산 매트리스 반덤핑 명령(A-570-092, EAPA Case 7856-7913)과 관련하여 Zinus USA Inc(11건, 판정문 기준 12건) 및 CVB Inc(10건)의 제보 조사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 다만 CBP가 집계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실제 건수와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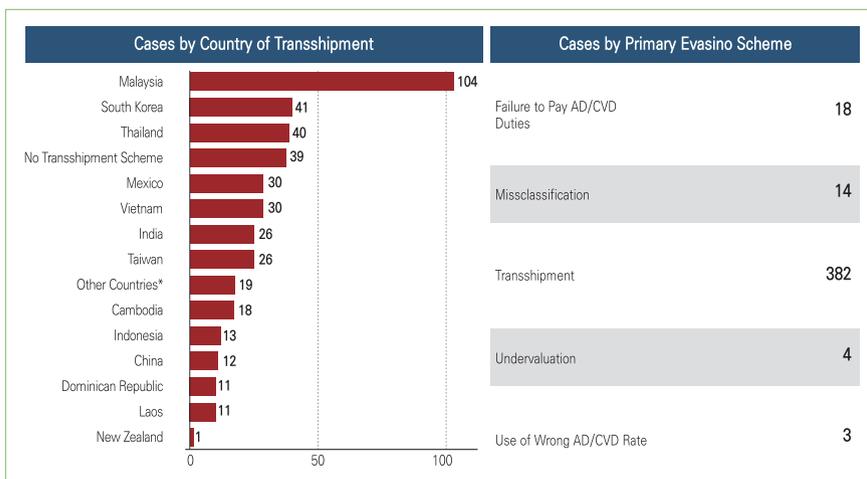


주1) “기타 국가” 에는 캐나다, 이스라엘,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싱가포르, 스리랑카,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U.A.E.)가 포함됨

주2) EAPA 관리 시스템(EAPA Management System), 2025년 10월 15일 기준

한편 주요 회피 유형별로는 제3국을 경유하는 환적이 3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관세 회피 목적의 반덤핑·상계관세(AD/CVD) 미적용 신고 18건, 품목분류 오분류 14건, 과세가격 저가신고 4건, 반덤핑·상계관세(AD/CVD) 세율 오적용 3건 순으로 확인되었다.

[그림2] EAPA 주요 회피 유형 및 환적국 현황



출처 : 그림 1과 같음

이를 종합하면, 중국산 물품의 대미 우회수출은 말레이시아·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3. EAPA 판정 사례 분석

CBP EAPA 판정문을 검토한 결과⁴⁾, 환적을 활용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최근에는 단순한 재포장이나 라벨 변경을 넘어, 제3국에서 일부 가공 공정을 수행하거나 경유국을 다변화하는 방식도 나타나고 있다. 주요 유형과 사건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단순 환적: 생산시설 부재 또는 생산능력 미흡

가장 빈번하게 확인되는 유형은 제3국에서 실질적인 제조 없이 라벨 교체나 재포장, 최소한의 공정만 수행한 뒤 원산지를 위장하는 방식이다. CBP는 생산시설의 존재 여부, 생산능력, 재무자료, 원재료 구매내역, 현장 실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생산 가능성을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회피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 조사건은 글리신(EAPA Case 7647, 2022), 하드우드(EAPA Case 7252, 2022), 매트리스(EAPA Case 7856, 2024)가 있다.

먼저 글리신 조사건(EAPA Case 7647, 2022)은 중국산 글리신이 인도네시아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수입되는 과정에서 원산지가 위장된 사례이다. 인도네시아 업체는 해당 물품을 자국에서 생산한 글리신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조사 과정에서 실제 제조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다. 특히 현장 조사에서 공장이 가동되지 않은 날짜를 제조일로 표기한 포장재가 확인되었다. 또한 주요 원재료인 메탄올의 구매량이 주장된 생산량에 비해 현저히 부족했고, 생산 및 운영 관련 자료 사이에서도 여러 불일치가 발견되었다.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 수출기업은 중국 기업이 투자한 인도네시아 법인으로, 해당 중국기업과 미국 수입 기업들간의 인적·재무적 특수관계도 확인되었다. CBP는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실질적인 제조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4) 2018년 - 2025년 회피 판정문 110건(실제 개시 건수 113건 중 문서가 열리지 않은 3건 제외)

하드우드 조사건(EAPA Case 7252, 2022) 역시 중국산 합판이 베트남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수입되는 과정에서 원산지가 베트남산으로 위장된 사례이다. 이 사건에서는 제보자가 제출한 영상 자료가 원산지 허위 신고 정황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었다. 영상에는 베트남 공장에서 관계자가 “Made in China” 라벨을 제거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다른 영상에서는 미국 수입업체의 로고가 인쇄된 상태로 사전 포장된 컨테이너가 확인되었다. 또한 해당 베트남 공장의 생산능력으로는 월 최대 30개 컨테이너 분량의 합판만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첫 달에 200개가 넘는 컨테이너가 수출된 것으로 나타나 생산능력과 수출 물량 사이의 현저한 불일치가 드러났다. 아울러 합판 제조에 필수적인 프레스 설비도 이러한 생산량을 뒷받침할 수 없을 정도로 제한적인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CBP는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회피 판정을 내렸다.⁵⁾

매트리스 조사건(EAPA Case 7856, 2024)은 중국산 매트리스가 한국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수입되는 과정에서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허위 신고된 사례이다. CBP 조사 결과 한국 공급업체는 실제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업체는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한 뒤 별도의 가공 없이 미국으로 재수출하고 있다고 시인하였다. 또한 화물 검사 과정에서는 매트리스에서 “Made in China” 표시가 발견되었고, 일부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을 ‘매트리스 받침대(지지대, mattress support)’로 허위 신고하여 관세 적용을 회피하려 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한편, CBP는 2024년 매트리스 조사건(EAPA Case 7856, 2024)에서 확보한 정황을 바탕으로, 2025년 매트리스 조사건(EAPA Case 7913, 2025)에서는 한국을 포함해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까지 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는 특정 품목에서 조직적인 회피 정황이 확인될 경우, CBP가 인접국 및 공급망 전반으로 조사 범위를 확장하여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판정문 확인 결과, 매트리스 외에도 다수의 특정 품목에서 이와 유사한 집행 기조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5) 본 사건에서 베트남 업체는 중국으로부터 앞면(face)과 뒷면(back) 베니어가 붙지 않은 상태의 반제품(두 겹(2-ply)으로 구성된 패널 및 목재 코어(core platforms))을 대량 수입하여 단순 공정(앞뒷면에 얇은 베니어 부착)만 수행하였으며, 미국 상무부는 이를 실질적 변형이 없는 최소 가공으로 판단함

[표 1] 주요 EAPA 회피(단순) 조사 목록

품목	EAPA Case	판정연도	우회 경로	주요 판단 사유
글리신	7647	2022년	중국 → 인도네시아 → 미국	- 필수 원재료 구매량과 제철 생산량 자료 간 불일치 - 생산 및 운영 관련 자료 간 불일치
하드우드 (Hardwood)	7252	2022년	중국 → 베트남 → 미국	- “Made in China” 라벨 제거 영상 확인 - 미국 수입업체 로고가 인쇄된 사전 포장 컨테이너 확인 - 합판 제조 필수 설비(프레스) 부재 - 제출된 생산능력 자료와 수출 물량 간 현저한 불일치
매트리스	7856	2024년	중국 → 한국 → 미국	- 한국 공급업체가 제조시설을 보유하지 않거나 생산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 - 중국산 제품의 단순 재수출 정황 확인 - 일부 제품에서 중국산 표시 확인
	7913	2025년	중국 → 한국 · 대만 · 베트남 · 인도네시아 → 미국	- 7856 사건에서 확인된 환적 정황을 토대로 조사 확대 - 한국 포함 대만·베트남·인도네시아로 조사 범위 확장

(2) 제3국 조립·공정의 불인정과 규제 대상의 엄격성

두 번째 유형은 제3국에서 실제 조립 또는 가공이 이루어졌더라도, 해당 공정만으로는 제품의 본질적 특성이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워 관세 회피로 판정되는 사례이다. 단순 환적과 달리 일정 수준의 제조활동이 수반되지만, 핵심은 공정의 존재 여부 자체가 아니라 그 공정이 실질적 변형에 이를 정도인지, 그리고 사용된 핵심 부품이 기존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있다.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은 일반적으로 조사대상 물품의 범위를 특정하는 서면 설명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HS Code(HTSUS)보다 이러한 서면 설명이 우선적인 기준으로 기능한다. 또한 명령의 범위 해석과 범위 판정 권한은 상무부(DOC)에 있으므로, CBP는 EAPA 조사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기존 AD/CVD 명령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되,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해석상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상무부에 이를 회부하여 판단을 받는다.

이에 따라 EAPA 사건에서는 제3국에서 수행된 공정이 제품의 원산지를 변경할 만큼 충분한 가공인지, 그리고 사용된 핵심 부품, 완제품 또는 미완성품이 기존 AD/CVD

명령상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중점적으로 검토된다. 다시 말해, 제3국에서 일정한 공정이 수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규제 대상인 중국산 핵심 부품이 사용되었는지와 그 공정을 통해 제품의 본질적 특성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는지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

이러한 판단 구조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태국 강철 휠 조사건(EAPA Case 7509, 2023)이다. 이 사건에서 태국 제조업체는 중국산 디스크와 태국에서 중국산 및 제3국산 강판으로 성형한 림을, 태국 공장에서 용접·도장 공정을 거쳐 강철 휠(22.5~24.5인치)을 완성하였다. 미국 수입업체는 이 완성품을 태국산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기존 규제 범위에는 중국산 림·디스크를 제3국에서 추가 가공한 경우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디스크는 중국산이었으나 림은 태국에서 중국산 및 제3국산 강판을 사용해 성형되었다는 점에서, 완성 강철 휠이 기존 AD/CVD 조치의 대상물품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CBP는 상무부에 범위 판정을 요청하였고, 상무부는 해당 태국 공정이 원산지를 변경할 정도의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완성 강철 휠 전체를 중국산 규제 대상 물품으로 판단하였다. CBP는 이를 근거로 태국산으로 신고된 해당 수입물품이 실질적으로는 중국산 규제 대상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 회피 판정을 내렸다.

한편 이 유형에서는 제3국에서 가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자체보다 기존 조치의 규제 서면설명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기존 조치의 규제 범위에 부분품 자체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거나, 제3국에서 추가 가공·조립을 거친 경우에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이미 명시되어 있다면, 제3국에서 일정한 가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규제 회피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3국 공정의 유무나 정도와 무관하게 우회수출 또는 환적을 통한 회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 사례로는 폴란드 이동식 접근장비(MAE) 조사건(EAPA Case 7907, 2025)이 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AD A-570-139 / CVD C-570-140)는 완제품 MAE뿐 아니라 시저 암(scissor arm), 붐(boom) 등 주요 반제품도 명시적으로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들 반제품은

수입 행위 자체만으로 미완성 MAE로 간주되고 제3국에서 추가 가공되더라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내용 역시 조치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 CBP의 현장 검증 결과, 중국 기업의 폴란드 자회사가 현지에서 조립·시험 공정을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해당 시설에는 부품 제작·용접·도장 등 핵심 제조 기능을 수행할 설비나 인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미국으로 수출된 제품에 사용된 주요 반제품 역시 중국에서 이미 상당 부분 가공된 상태로 반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CBP는 조립·시험 공정의 존재만으로는 중국산 반제품의 원산지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폴란드 원산지 신고를 인정하지 않았다.

두 사례는 공통적으로, 최종 완성품에 핵심 규제 부품이 포함된 경우 제3국에서 일정한 가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조치 문언이 반제품이나 부분품을 명시적으로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제3국에서의 조립·가공은 원산지 변경의 근거가 되기 어렵고 환적과 유사한 방식의 회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유사 제품을 제조·수출하는 기업은 기존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의 서면 설명과 규제 대상 범위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2] 주요 EAPA 회피(제3국 조립 및 엄격성) 조사 목록

품목	EAPA Case	판정 연도	우회 경로	주요 판단 사유
강철 휠 22.5·24.5 인치	7509	2023	중국 → 태국 → 미국	- (상무부 공조) 기존 규제범위에 중국산 림과 디스크를 모두 사용한 경우는 명시했으나, 혼합 원산지 제품에 대해서는 문언상 모호함이 존재 → 상무부 범위판정 회부 - 범위판정 결과 태국에서 제조된 림 중국산 판정 → 기존 규제 대상인 중국산 디스크와 결합된 완제품 전체를 AD/CVD 대상으로 판단
이동식 작업대 (MAE)	7907	2025	중국 → 폴란드 → 미국	- (CBP 판단) 범위 규정상 중국산 반제품 포함 시 미완성 MAE로 간주 - 폴란드 공정은 실질적 변형으로 불인정

(3) 회피 경로의 다변화

최근 우회 수입 경로는 기존의 동남아시아 중심 구조에서 튀르키예, 폴란드, 이스라엘 등으로 빠르게 다변화되고 있다. CBP는 데이터 분석과 현장 검증을 결합해 이러한 우회 수입을 적발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튀르키예와 이스라엘 경우 사건을 들 수 있다.



마그네슘 금속 조사건(EAPA Case 7969, 2025)에서는 중국산 AZ91E 마그네슘 합금 잉곳 제품을 튀르키예산으로 허위 신고하여 적발된 사례이다. 공급업체는 튀르키예산 스크랩을 재활용해 제조했다고 주장하였으나, CBP 조사 결과 실제 대미 수출 물량을 총당할 만한 스크랩 구매 이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현장 검증 과정에서 중국산 순수 마그네슘 및 AZ91D 합금 잉곳 컨테이너가 발견되었다. CBP는 이러한 원재료 구매 이력의 불일치와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를 토대로 회피를 확정하였다.⁶⁾

잔탄검 조사건(EAPA Case 7844, 2024)도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 이 사건에서는 중국산 잔탄검이 이스라엘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수입되면서 이스라엘산으로 허위 신고된 점이 문제되었다. CBP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보고서를 주요 판단 자료로 활용하였는데, 동 보고서는 잔탄검 생산 가능 국가를 오스트리아, 프랑스, 중국, 미국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스라엘이 생산국이 아님을 뒷받침하였다. 또한 조사 대상 이스라엘 유통업체 역시 해당 물품이 실제로는 중국산임을 인정하였다.

[표 3] 주요 EAPA 회피(수출국 다변화) 조사 목록

품목	EAPA Case	판정 연도	우회 경로	주요 판단 사유
AZ91E 마그네슘 합금 잉곳 제품 (AZ91E Mg alloy ingots)	7969	2025	중국 → 튀르키예 → 미국	- 수출 물량 대비 스크랩 구매 이력 부족 - CBP 조사결과 중국산 원재료 확인
잔탄검	7844	2024	중국 → 이스라엘 → 미국	- USITC 자료상 이스라엘은 상업적 생산국 아님 - 이스라엘 유통업체 중국산 인정

(4) 복합형 : 환적과 오분류·저가신고

마지막 유형은 단순 환적에 오분류와 저가신고가 결합된 복합형 수법이다. 이 유형은 단순한 경로 우회를 넘어, 복합적인 위장 수법으로 관세당국의 감시를 회피하려는 특징이 있다.

6) 동 사건에서는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회피 부정 판정이 내려짐

2022년 석영 표면 제품 조사건(EAPA Case 7657, 2022)은 중국산 석영 표면 제품들이 말레이시아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수입되는 과정에서 원산지가 위장되고, 규제 대상이 아닌 수산화 알루미늄 표면 제품(Aluminum Hydroxide Surface Products)이나 테라조(Terrazzo) 등으로 허위 신고된 사례이다. CBP는 신고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수입 물품 중 일부를 무작위로 선정해 직접 연구소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해당 물품이 실제로는 규제 대상인 석영 표면 제품임을 확인하였다.

말레이시아 주철관 및 이음쇠 사건(EAPA Case 7819, 2024)에서는 수입업체가 중국산 배수용 주철관(CISP)과 이음쇠(CISPF)를 말레이시아를 경유하여 수입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CBP 조사 결과, 수입업체가 제출한 두 건의 수입계약서에는 서로 다른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구조가 킬로그램(kg)당 약 1달러(U.S. \$1) 수준으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CBP는 서로 다른 HTSUS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제품이 동일한 가격 구조를 보인다는 점을 이례적으로 보았다.

또한 제출된 일부 계약서에는 길이, 표면 마감, 끝단 처리 등 제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세부 속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신고된 가격의 적정성을 정확히 검토할 수 없었다. 이에 CBP는 수입업체와 말레이시아 공급업체에 가격 산정 근거와 가격 구조를 설명하라는 정보 요청을 보냈으나, 해당 업체들은 이에 회신하지 않았다. 결국 CBP는 불리한 추론⁷⁾을 적용하여, 해당 제품들이 관세 회피를 위해 인위적으로 저가 신고되었다고 결론지었다.

[표 4] 주요 EAPA 회피(복합형) 조사 목록

품목	EAPA Case	판정 연도	우회 경로	주요 판단 사유
석영 제품 (QSP)	7657	2022	중국 → 말레이시아 → 미국	- 중국산 석영표면제품을 규제 대상이 아닌 품목으로 허위 신고 - 연구소 분석을 통해 해당 물품이 실제 규제 대상 물품임을 확인
주철관 및 부속품 (CISP·CISPF)	7819	2024	중국 → 말레이시아 → 미국	- 말레이시아 산으로 허위 신고 및 저가 신고 - CBP 자체 조사로 저가신고 사실 관계 입증 - 말레이시아 업체 생산시설 부재 확인

이밖에도 수입업자와 해외 공급업체 간 특수관계를 활용하여 거래 구조를 은폐하거나 관련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다양한 환적 회피 수법이 확인되고 되었다.

7) CBP가 EAPA 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가 협조하지 않거나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을 때, 불리한 추론에 근거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음(징벌적 성격)

4. 마무리 하며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EAPA 판정 사례들은 관세 회피 수법이 단순한 환적을 넘어 점차 복합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주로 물류 경로를 우회하는 방식이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형식적인 가공 공정을 추가하거나 기존에 자주 지목되지 않던 제3국을 경유지로 활용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 품목 오분류와 저가신고를 결합한 사례까지 증가하면서 관세 회피 구조는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 CBP는 조사 방식을 다변화하고, 상무부와 공조하여 회피 여부를 보다 정밀하게 검증하고 있다. 단순한 현장 실사에 그치지 않고, 물품의 성분분석, 생산설비 규모 검토, 생산기록 및 원재료 조달 내역 확인 등 실제 제조·가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회피로 판정될 경우,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기업은 상당한 법적·재무적 부담을 지게 된다. 이에 수출기업은 공급망 전 단계에 걸친 기록 관리와 검증 절차를 갖추고, 거래 상대방의 실제 제조시설, 가공공정, 원재료 조달 경로 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대응 요건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자료 제출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사당국의 요구에 성실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사당국의 정보 요청에 성실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불리한 추론이 적용되어 막대한 관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